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32
----------	------

발의연월일 : 2025. 3. 25.

발의자 : 양부남 · 김한규 · 박정현
전진숙 · 허성무 · 정진욱
박균택 · 안동걸 · 권향엽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 · 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 · 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

한 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
설 및 제7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항제7호,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로 한다.

8의2.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지급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얻은 수익 관련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급정지 조치 요구,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8의2.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u>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 <u>제1항제7호,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u>

1. ~ 3. (생략)

④ · ⑤ (생략)

<신설>

제74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지급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얻은 수익 관련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급정지 조치 요구,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별칙) ①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7. (생 략)

② (생 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를 위반하여 경제적 또는 정
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
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
조제1항제3호의2

-----.